

ALL ABOUT PATENT

유·익·한·특·허·상·식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인정된 특허들은 정말 다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일까? - 개그콘서트를 통해서 본 특허요건의 고찰

유성원 | 지심 IP & Company 대표변리사

개요

요즘 무한도전이나 1박2일과 같은 예능프로그램들이 방송사 파업으로 그 인기가 주춤하고 있는 동안, 압도적인 시청률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단연 개그콘서트라고 할 수 있다. 개그콘서트는 다수의 관객들이 참여하는 대형 콘서트 홀에서 개그맨들이 짧은 썰 코너를 매주마다 공연하는 공개 창작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개그콘서트는 1999년 9월 4일 첫 전파를 탄 이후, 대한민국 코미디 프로그램 중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방영되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방영되면서 많은 스타를 배출하였고, 많은 유행도 만들어 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유행어의 3분의 2는 전부 개콘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개그콘서트에서 요즘 새롭게 방영되고 있는 코너가 있다. 바로 “이기적인 특허소”라는 코너이다. 특허업계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웬만해서는 예능프로그램에서 자주 들을 수 없는 단어인 ‘특허’가 들어가는 코너명에 귀가 번쩍하며 관심이 가게 되었다. “이기적인 특허소” 코너가 다른 인기 코너인 “애정남”, “사마귀유치원”, “격기도” 등보다 재미나 인기 면에서 아직은 못한 게 사실이지만,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직업병 내지는 인지상정인 것 같다.

“이기적인 특허소”의 프로그램 포맷은 이렇다. 등장하는 인물들 한 가운데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한명이 앉아 있고, 양쪽에는 애플의 CEO였던 고 스티브잡스를 패러디한 인물과 국내의 S전자의 임원을 상징하는 듯한 인물이 각각 앉아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특허 내겠다고 하면서

각종 기발한 발명들로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다.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제안되는 특허발명들은 다양하다. 사람의 특정한 기분이나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특허’, ‘기쁨특허’, ‘황당특허’, ‘당황특허’ 등이 있고, 새로운 유행어 대한 ‘유행어 특허’도 있고, 아직 특정한 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에 대한 기발한 이름을 짓는 ‘이름 특허’도 있고, 기발한 신제품에 대한 ‘신제품 특허’도 있다. 이기적인 특허소 가운데 앉아 있는 재판관은 양쪽에서 설새 없이 제안되는 새로운 특허들이 웃기고 기발하기만 하면 “특허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특허를 수여해준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들은 진짜로 현행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실제로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들의 거의 대부분은 현행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발명들을 중심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 특허요건에 대하여 한편 살펴보도록 하자.

특허의 요건

1. 특허법의 보호 대상 - 발명

특허법 제1조에 의하면 특허는 발명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명은 무엇인가? 특허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즉, 발명은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2) 기술적 사상이어야 하며, 3) 창작이어야 하고, 4) 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심사기준에 의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것(무한 영구 동력기관, 자연법칙 그 자체 등), 기술적 사상이 아닌 것(미술작품 등, 단순 영업방법 등)은 특허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등장하는 각종 ‘분노특허’, ‘기쁨특허’, ‘황당특허’와 같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웃기는 상황들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기술적 사상도 아니기 때문에 발명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것이다. 즉, 특허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일상생활의 상황들을 모두 특허받아 놓고 독점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아마도 지구 상의 있는 사람들의 열에 여덟, 아홉은 모두 특허권 침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유행어 특허”나 “이름 특허”는 어떨까? 이들 특허 역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기술적 사상도 아니어서 발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발한 유행어나 물건의 이름은 전혀 그 창작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물건의 새로운 이름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는 식빵을 담는 봉지의 입구를 봉해서 고정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납작한 고정수단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고 묻는다. 아직 그 명칭이 마땅하게 정해진 것이 없는 물건이다. 개그맨 박영진이 그 고정수단의 새로운 이름을 “빵꼬또꼬”라고 짓는다. 그 이유는 그 고정수단의 기능이 “빵 먹꼬, 또 묵꼬”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기발하다.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한 이름 특허를 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의 명칭은 특허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빵꼬또꼬”의 원래 아이디어를 제공해줬을 것을 생각되는 “빵꾸똥꾸”라는 명칭은 상표 검색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이미 상표출원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류, 서적, 광고업 등에 지정이 되어 있었다.

간략정보

건본보기

(1 - 5 of 5)

> 전체 : 2,581,998건

번호

건본이미지

출원(국제등록)번호
출원(국제등록)일자

공고번호
공고일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우선권주장번호
우선권주장일자

상태

상표분류

도형코드

출원인

대리인

영향

전문

1

빵꾸똥꾸

4020110040285
(2011.07.25)

4020110090921
(2011.12.05)

공고

25

빵꾸똥꾸

2

빵꾸똥꾸

4020100008002
(2010.02.12)

4020110011036
(2011.02.21)

포기

16

빵꾸똥꾸

3

빵꾸똥꾸

4020110039435
(2011.07.20)

출원

16

빵꾸똥꾸

4

빵꾸똥꾸

4120110022401
(2011.07.28)

출원

35

빵꾸똥꾸

5

빵꾸똥꾸

4120090029829
(2009.12.07)

4120110009592
(2011.02.16)

포기

41

빵꾸똥꾸

만약, 개그맨 박영진이 특허출원이 아닌 상표출원을 식빵 관련한 음식 제품에 “빵꼬또꼬”로 출원을 하면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또, 동그란 너트 형상의 라이터 부싯돌 부품의 명칭 역시 “물레방아처럼 생긴 불을 키는 도구”라는 의미로 “물레방아”라고 지었는데, 이 역시 특허가 아닌 상표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유행어는 어떨까? 개그맨 박성광이 즐기치게 밀고 유행어 “생각 생각 생각 좀 하고 말해” 같은 유행어 역시 특허로는 같은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어가 상품에 사용되어 상품의 출처 식별표지로 사용된다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표도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박성광의 유행어 “생각 생각 생각 좀 하고 말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구어체의 표어 같은 것들)에 해당하여 상표권으로도 등록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신제품 특허

그렇다면,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특허 중에서 실제로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제품 특허 정도에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특허들은 상당히 기발하여 변리사인 필자가 보더라도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바지의 엉덩이 부분에 의자의 받침판을 붙이고, 의자 다리는 접을 수 있도록 구성 하여 언제 어디서나 의자를 만들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바지를 들 수 있다. 특허로 등록 받으려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신규성이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특허출원 전에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고, 진보성이란 특허출원 시를 기준으로 특허출원 전에 세상에 알려지고 공개된 발명들로부터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발명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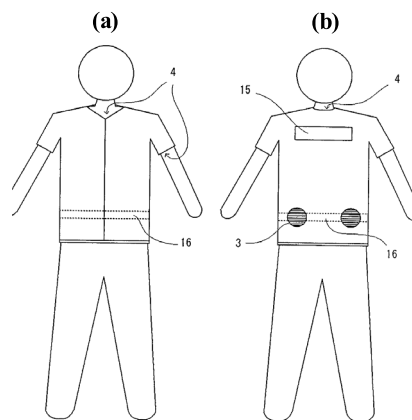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신제품 특허들을 보면,

- 1) 지루한 직장상사와의 회의 시간에 핸드폰으로 판짓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고안된 자켓 소매에 모형 손을 구비한 “저 열심히 회의 중이에요 자켓”,
- 2)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서서 가면서도 쉴 수 있도록 자켓 상단에 걸고리를 구비한 “아따 나 좀 쉽시다 자켓”,



3)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을 위하여 겨드랑이 부분에 선풍기를 구비한 일명 “put your hands up” 등이 있는데,

그런데, 간단한 특허 검색을 해보니 3번의 일명 “put your hands up” 자켓은 일본의 한 회사에 의하여 이미 유사한 발명이 특허출원 되어 있었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발한 이기적인 특허소의 신제품 특허가 나온 것을 보고 시청자 중 누군가가 모방하여 특허출원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그 모방한 시청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발명 내용이 이미 방송을 통하여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기적인 특허소를 통해서 공개된 신제품 특허는 오로지 그 신제품을 발명한 이기적인 특허소의 출연진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특허법은 자신의 발명을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먼저 공개한 발명자 본인에 한해서 공개 후 6개월 이내 특허출원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공지에외주장 제도라고 하는데, 논문 발표나 신제품 출시를 먼저 한 발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나오는 각종 특허들은 현행 특허법 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으며, 보호를 받더라도 특허가 아닌 상표권과 같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어찌됐든, 개그콘서트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특허와 같은 딱딱한 내용이 개그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계속해서 이기적인 특허소에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결론 및 시사점